

회 사 명 : 플러스자산운용(주)
(영문명) PLUS Asset Management Co.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plusasset.com>

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. 36층 (Three IFC)
(전화) (02) 3787 - 2700

대표이사: 민 경 원

담당임원: (직책) 경영기획본부장
(성명) 신진영 (전화) (02) 3787 - 2755

작성자 : (직책) 대리
(성명) 이예슬 (전화) (02) 3787 - 2752

제출이유: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 제7조제3항 및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' 제3조 제1항에 따라 플러스자산운용(주)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.

(붙임 1)

임원 선임 내용

1. 선임

직 위	성 명 (한자)	주민등록 번호	선임일 (최초선임일, 선임횟수)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주요경력 ¹⁾	검 직사 항 ²⁾	자격요건 확인결과 ³⁾
이 사	한현우 (韓賢禹)	750315 -1036421	2019.1.1 (2017.1.1, 3)	1년 (19.12.31)	마케팅 업무 총괄	현 플러스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이사	무	결격사유 없음

주 1)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(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, 현직여부 표시)

2)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(자회사등 여부) 및 업종,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, 겸직기간 등 기재

3)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

2. 임원현황(변동후)

직 위 (상임 및 등기 여부)	성 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 (최초선임일, 선임횟수)	임기만료일	주요경력 ¹⁾	겸직사항 ²⁾	비 고
대표이사 (상임, 등기)	민경원 (閔庚元)	671228	2018.3.28 (2018.3.28, 1)	21.03.27	現 플러스자산운용/ 부사장 前 파인브릿지자산운용 /대표이사	무	
전무이사 (상임, 등기)	이관홍 (李寬弘)	680513	2018.03.28 (2018.3.28,1)	19.03.22	現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	무	
전무이사 (상임, 등기)	백운성 (白雲成)	690325	2018.03.28 (09.01.23, 3)	21.03.27	現 플러스자산운용 마케팅본부 본부장	무	
감 사 (비상임, 등기)	박태규 (朴泰奎)	690529	2018.03.28. (15.03.25,2)	21.03.27	現 한국야쿠르트 경영지원부문장	유 (한국야쿠르트 / 제조업 / 경영지원부문장)	
상무이사 (상임, 비등기)	박승철 (朴昇喆)	711003	2018.11.02 (2013.6.1, 7)	20.11.01	現 플러스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 상무	무	
상무이사 (상임, 비등기)	신진영 (申鎭煥)	710213	2017.11.13 (2017.11.13, 1)	19.12.30	現 플러스자산운용/ 경영기획팀 상무 前 파인브릿지자산운용 / 경영기획팀 상무	무	
이 사 (상임, 비등기)	한현우 (韓賢禹)	750315	2017.12.31 (2017.1.1, 2)	19.12.31	現 플러스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이사	무	

주 1)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(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)

2)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(자회사등 여부) 및 업종,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, 겸직기간 등 기재

성명	한현우	직위	이사	직전 근무처 및 직위	플러스자산운용(주) / 이사
심사항목			심사결과		비고
<p>8.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)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: 해당 은행,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(「은행법」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. 이하 “은행의 자회사등”이라 한다), 해당 은행의 자은행(「은행법」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. 이하 “은행의 자은행등”이라 한다),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(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. 이하 “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”이라 한다)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</p> <p>2)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: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</p> <p>3)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: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(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)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</p>			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		
<p>종합의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음</p>					
<p>2018년 12월 27일</p> <p>플러스자산운용(주) 임원 한현우 (인)</p> <p>플러스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민경원 (인)</p>					

【첨부서류】

1. 이력서*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 및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
*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‘등록기준지(본적)’를 반드시 기재
2.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(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)
3.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,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
5.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